

수도권정비계획법완화촉구건의안

의안 번호	665
----------	-----

제안년월일 : 2001년 5월 14일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장

1. 주 문

우리 파주시는 지역적으로 통일 한국의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면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하여 줄 것을 3만여 파주시민의 서명서와 함께 정부 및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코자 함.

2. 건의이유

가. 지난해 접경지역 지원법이 제정되고 인근 신도시개발에 힘입어 연차적인 개발압력을 받고 있으나 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권역내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고

나.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적정배치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나 우리 파주시의 경우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그동안 과도한 제한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공장설립과 공업용지개발 및 택지개발, 관광지 조성사업, 대학유치 등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음

다. 따라서 접경지역 개발지원 정책에 의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해 우리 파주시가 다가오는 통일시대의 남북 거점도시로 성장하여 통일 한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임.

3. 제 출 처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새천년민주당대표, 한나라당총재, 자유민주연합 총재권한대행,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새천년민주당 파주시지구당위원장, 한나라당 파주시지구당위원장, 파주시장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촉구 건의안

우리 파주시는 지역적으로 통일 한국의 중심지역이고 접경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최근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교류협력의 전초 기지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면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접경지역 지원법이 제정되고 인근 신도시개발에 힘입어 연차적으로 개발 압력을 받고 있으나 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권역별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우리 파주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공장설립과 공업용지개발 및 택지개발, 관광지 조성사업, 대학유치, 각종 조세 관련 혜택 등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우리시 행정구역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민간개발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개발조차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지역경제의 침체와 비 접경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소외 의식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접경지역 개발지원 정책에 의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해 우리 파주시가 다가오는 통일시대의 남북 거점도시로 성장하여 통일 한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우리시를 규제하고 있던 개발저해 요소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 촉구를 위한 범 시민 서명운동을 통하여 3만여 시민이 서명한 서명부와 파주시민 모두의 뜻이 담긴 내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 완화하여 줄 것을 촉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5월 14일

파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

덧붙임 : 수도권정비계획법완화촉구건의 서명부(30,858명)